

분쟁조정 및 PL관련 판례 사례



외국의 PL관련 판례(가스 중심-일본사례)

가스순간온수기로 인한 CO중독사망사건

- 2002년 2월 7일 고등재판소 평성10년 제319호
- 손해배상청구항소사건 판결, 지방재판소 평성7년 제749호

가. 당사자

항소인

원고 : A: 본건 아파트 임차인으로, 28세 남자 사망,

C: A의 父

D: A의 아들이나 상속 포기하여 C가 단독으로 상속 하였으나

1999년 11월16일 사망함으로써, 이하인들이 승계함

- 원고승계인 X1 : C의 처

- 원고승계인 X2 : C의 장녀

- 원고승계인 X3 : C의 이녀

- 원고승계인 X4 : C의 장남

피 항소인(피고)

- 주식회사 파로마 : 가스기구 제조 · 판매회사

- 후쿠넨 : 프로판가스 공급 · 가스기구 설치공사업자

- 호쿠에이테크노 주식회사 : 급탕설비 설치 · 보수 · 수리 회사
- 호쿠에이 · 마이리 : 급탕설비 설치 · 보수 · 수리 회사
- Y : 본건 아파트 소유자로 C에게 임대한 자

나. 사고내용

1992년 4월 3일 오후 8시경, A는 욕실에 물을 반기 위해 본건 거실 내에 설치된 파로마 가스 순간온수기(강제배기형, 품명PH-101F)를 사용한 바,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실내에 충만하여 급성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다. 사고원인

본건 순간온수기는 원래 내부에 강제배기장치를 구비하여, 점화스 위치를 켜서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배기관으로부터 실외로 배기하고, 그 대신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켜 불완전연소를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런데 본건 사고시에는 본건 순간온수기의 강제배기장치가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고, 그 때문에 실내의 산소결핍으로 불완전연소를 일으켜 그 결과 일산화탄소가 실내에 충만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또, 본건 사고 이전에 본건 순간온수기와 동종의 순간온수기에 대해 서 다른 곳에서도 동종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들의 책임

① 주식회사 파로마

- 본건 순간온수기의 하자가 있었다. 본건 온수기는 제어기판의 납점부분에 땀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점화해도 강제배기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본래 강제배기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장치인 가스통로를 차단하는 장치(배기overflow방지장치)가 작동하여 연소가 정지되는 구조로 되어있는 바, 본건 온수기의 제어기판에는 추가배선에 의한 개조가 되어있고, 안전장치가 가능하지 않고 점화연소가 계속되는 상황이 되었다.

- 1)본건 순간온수기를 제조 · 판매함에 있어서, 그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 · 하자 없는 상품을 제공해야할 의무, 2) 본건 제품의 설치자 · 시공자에 대하여 설치 후의 보수 · 점검방법, 상품의 교환시기, 고장시의 수리방법, 수리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 3) 상품의 결함 ·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자를 통해서 상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사고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전기 하자있는 본건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본건 제품의 설치자·시공자에 대하여 보수점검의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혹은 사고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에 의해 본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 비록 본건 순간온수기를 제조하지는 않았지만, 본건 순간온수기에는 파로마 명칭이 붙어있고, 취급설명서와 공사설명서에도 파로마가 제조한 것으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표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파로마는 신의칙상 본건 제품이 파로마제품이 아니라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고, 적어도 제조사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 파로마는 가스기구라 하는, 그 고장이 즉 인명의 위험을 초래 할 개연성이 높은 위험물을 취급하여 독점적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고 있으며, 그 사회적 책임을 매우 중한 것이다. 더욱이 본건 사고 이전에 동종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본거 온수기의 컨트롤박스 단자에 납점이 떨어져, 연소하지 않은 경우에, 본건 온수기의 취급업자가 응급조치로서 추가배선에 의한 개조방법으로 안전 장치가 가동하지 않고 점화연소가 계속되도록 수리하는 것을 예상하여, 안전한 수리방법에 대하여 동취급업자에 대해서 통지를 철저하게 시킬 의무가 있음을 이를 해태하였다.

② 후쿠렌

- 프로판가스공급업자로서 프로판가스 및 가스기구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고도의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고, 본건 온수기의 보수점검을 첨부했기 때문에, 가스기구의 불완전연소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배기장치가 연소 중에 정지하지 않는가, 정지한 경우에는 배기 overflow방지장치가 작동하는가 등 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Y로부터 본건 온수기의 설치·보수·점검을 의뢰 받으면서, 본건 온수기의 교환을 권고하지 않고, 본건 온수기의 전기한 하자를 묵인하거나, 전기 하자를 작출한 과실에 의해 본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 후쿠넨은 그 종업원이 적절한 점검 수리를 해태한 과실에 의해 본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본건 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다.

③ 호쿠에이라(호쿠에이테크노 주식회사, 호쿠에이·마이리)

- 프로판가스를 사용한 설비를 일반 소비자주택에 설치하고, 이를 보수·점

검·수리하고 있으므로, 본건온수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전기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것을 발견하여 본건 온수기의 사용을 중지시키던가, 이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에 의해 본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 호쿠에이라는 종업원이 적절한 점검 수리를 해태한 과실에 의해 본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본건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다.

(4) Y

- 아파트 소유자 겸 본건 거실 임대인이므로, 임차인의 임차가옥 내에서의 생명·신체·건강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위 안전확보의무에 위반하고, 본건 온수기의 교환을 절약하기 위해, 보수용품의 보존기간인 7년의 2배에 가까운 14년간이나 노후화한 본건 온수기를 계속 설치한 이외에, 임차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본건 온수기의 보수점검·수리를 하고, 가스누설장치 등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과실에 의해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 비록 Y가 본건 온수기의 보수점검을 후쿠텐에 위탁했다 해도, Y는 임대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가스기구의 보수점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후쿠넨을 이행보조자로 이용한 것이며, 그의 고의 과실은 Y의 고의과실과 동일할 수 있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

- A는 본건 거실에 입거한 직후부터 두통이 났지만, 그 원인은 가스기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서, Y에게 가스기구를 점검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Y는 그 점을 시행하지 않았다.

- Y는 임대차계약에 기한 안전배려의무위반, 민법709조(불법행위) 또는 민법717조(토지·공작물소유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마. 손해 (총액 : 8785만 7782엔/인용액 5701만 8136엔)

- 장례비용 : 130만엔(인용액 100만엔)

- 일실이익 : 5555만 7782엔(인용액 3301만 8136엔)

위자료 : 2300만엔(인용액 1800만엔)

변호사비용 : 800만엔 (인용액 500만엔)

바. 피고들의 책임 유무(판단)

① 주식회사 파로마

- 본건 온수기는 파로마공업이 제조한 것이며, 파로마가 제조했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파로마는 판매한 것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파로마의 본건 온수기에 대한 제조물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상품을 판매만 했어도 당해상품에 하자(결함)가 있는 경우에 판매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고 본건 온수기에 대해서 제품으로서의 하자(결함)의 유무를 검토하기위해, 먼저 본건 온수기가 출하·판매된 당시에 그 콘트롤박스의 제어기판의 납땜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 그 후 경년사용에 의해 제어기 판의 납땜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온도변화가 있다는 것으로는 어느정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본건 온수기에 사용된 납땜이 통상의 가스기구에 사용되는 땜납보다 내구성이 떨어지던가, 온수기에는 통상보다 내구성이 우수한 땜납을 사용해야 한다던가 하는 사정을 인정하는데 충분한 증거도 없다.)

또, 비록 본건 온수기는 강제배기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배기overflow방지장치에 의해 연소가 중지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건 온수기 납땜때문에 땜납이 떨어졌다는 것을 가지고 본건 온수기의 판매시의 하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 본건 개조에 의한 추가배선에 의해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점화 연소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판매당시에 추가배선이 시공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배선이 된것을 가지고 본건 온수기의 판매당시의 하자라고 하는것은 불가능하다.

- 따라서 파로마가 하자있는 온수기를 판매한 것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 (또, 이러한 것을 하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조사에 준한 책임의 유무도 문제되지 않는다.)

- 파로마가 본건 온수기의 판매당시에 본건과 같은 위험한 개조 시공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예견하는 것이 곤란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개조를 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불

가하다.

– 파로마는 87년 동종사고 발생 후 전국 각 영업소에 대해서 파로마공업제 온수기에 의한 일산화탄소증독 사고 발생, 사고원인 및 대처방법을 연락 통지하여 철저히 주지시켰고, 또 파로마서비스, 파로마제품판매대리점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업자외에, 일반 가스기구판매점, 수리업자 등에 대해서도 정기 혹은 수시강습회에의 참가를 호소하고, 혹은 업자 자주적인 연수회에 참가하여 본건과 같은 개조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함과 더불어 이것을 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더욱이 감독관청인 통산성, 사단법인 일본가스석유기기공업회, 고압가스보안협회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행하고 있으며, 동종사고 발생 후에 해야 할 의무를 해태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기타 주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이라크戰〉 에너지절약대책 시행

승용차 강제10부제와 에너지사용시간 제한조치 등이 포함된 에너지절약시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보통 1주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 이뤄지만, 유가가 단기간에 폭등하는 긴급상황에 직면할 경우 공고 즉시 시행될 수도 있다.

산업자원부의 전시 조치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전쟁 초기에 유가가 급등하면 추가적인 에너지사용 제한, 금지조정명령이 시행된다.

이미 지난달부터 공공기관 승용차10부제와 백화점, 할인점, 자동차판매소, 주유소 등의 옥외조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데 이어 추가조치로 조명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겠다는 얘기다.

2단계로 국지적인 에너지 수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놀이공원과 위락시설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에 대해 에너지를 제한 공급하고 전력 공급량을 통제하는 직접부하제어도 전력다소비 사업장 400여곳을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국의 100만가구 이상이 사용중인 지역난방도 제한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

3단계로 수급차질이 국내 전반에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한송전의 시행 여부를 저울질하게 된다.

승용차 강제 10부제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승용차 강제 10부제 시행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배기량 800cc미만의 경차와 운행이 불가피한 긴급용 및 장애인용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되, 생계형 차량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쳐 임시운행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운행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할 방침이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